

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

2014.3.1 제정
2015.10.1. 일부개정
2017. 9.1 일부개정
2019. 3. 1. 일부개정
2020. 1. 1 일부개정
2021. 9. 1 일부개정
2024. 9. 1. 일부개정
<학사팀>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127조에 근거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 인재 및 다양한 전공의 창의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설계전공의 허가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9.1.>

제2조(신청자격과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) ①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104조(자격 및 신청)에 따른다. <개정 2024.9.1.>

② 해당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(이하 “설계지도교수”라 함)의 지도 아래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한다.

③ 설계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(부) 교원에 한하지 않는다.

제3조(신청과 승인절차) ① 학생설계전공은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.

1. 학생설계전공 신청서([별지서식 1])
2. 학생의 학업계획서([별지서식 2])
3.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목록([별지서식 3])
4.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([별지서식 4])

② 학생설계전공의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설계지도교수와 학생의 전공설계 제안
2.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
3.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
4. 총장의 승인

③ 학생은 기 설치된 학생설계전공에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학생설계전공은 설계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설계전공 신청 학생과 협의하여 설계한다.

② 학생설계전공의 이수 교과목(전공에 한함)은 36학점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학생설계전공은 3개 이상 학과(부)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④ 제1전공이 소속된 캠퍼스 내 유사학과(부)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 내 학과(부)의 전공과목을 우선 적용하며, 이수 교과목의 3분의 1이상은 해당캠퍼스 내 학과(부)의 과목으로 한다.

⑤ 교육과정 편성 시 교과목 개설학과(부)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학과(부)는 전공의 특성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설계전공 이수교과목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9.1.>

⑥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제2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학생설계전공은 허용되지 않는다.

- ⑦ 학생설계전공은 국내외의 다른 대학의 교과목 또는 대규모온라인공개강좌(MOOC)를 3분의 1 이내로 하여 이수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⑧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설계전공의 이수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학생설계전공위원회) ①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(위원장)
2. 해당학생이 소속한 학과(부)의 학과(부)장
3. 학생설계전공에 포함된 교과목을 관장하는 학과(부) 소속 교수 2인 이상(교수의 소속이 동일하지 않을 것)

②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설계전공 학생 선발, 추천
2. 교육과정 편성과 학위명
3.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
4. 학생설계전공 이수 교과목의 변경
5. 그밖에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6조(교무처의 심의와 허가) ① 교무처장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설계전공을 허가한다.

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설계전공의 적절성을 심의한다.

1. 학생설계전공의 창의성
2. 교육과정의 적절성
3. 학생의 학생설계전공 이수 가능성
4. 그밖에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7조(학생설계전공 개설의 제한) ① 한 교수가 개설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3개 이내로 한다.

② 한 교수가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로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(설계지도교수에 대한 지원) ①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생설계전공의 기획 개발비
2.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비

② 제1항 제1호의 개발비는 학생설계전공이 허가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③ 제1항 제2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, 학생지도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제9조(학생설계전공의 폐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설계전공은 폐지의 대상이 되며, 교무처장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계속 개설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1. 6학기 연속 전공진입 학생이 없는 경우
2. 전공운영 중 연속 5년간 전공 진입학생의 누적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
3. 그 밖에 학생설계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설계전공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지유보 신청서를 제출받아 폐지를 유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개정 조항: 제2조 제1항 삭제, 제2조 제3항 신설)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개정 조항: 제2조 제1항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개정 조항: 제2조제1항, 제4조제4항, 제4조제5항,제4조제6항,제4조제7항,제4조제8항)

부 칙

1.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9조 신설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(별지서식1 개정)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, 제4조, [별지서식1], [별지서식3] 개정, [별지서식5] 신설)